##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559

발의연월일: 2023. 3. 10.

발 의 자 : 윤준병 • 민병덕 • 양정숙

김성주・양경숙・이수진(비)

김용민 · 김철민 · 김원이

민형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0조의5제2항 신설), 농어업법인

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안 제20 조의3제2항제4호의2 신설),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며(안 제28조제1호 신설),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호・제3호 신설 및 제33조제1호 삭제).

#### 법률 제 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 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호를 같은 조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0조의3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 청구 제31조의2제1호를 같은 조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생 략) |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 ②                          |
|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                            |
|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      |                            |
| 산을 청구할 수 있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4의2.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        |
|                      | 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및            |
|                      | <u> 어업법인</u>               |
| 5. • 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    |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          |
| 축) ① (생 략)           | 축)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           |
|                      | 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       |
|                      | 에 따른 설립신고 • 변경신고           |
|                      |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
|                      |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
|                      |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u>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u> |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 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28조(청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신 설>

-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 에 관한 사항
-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 법인의 설립·운영 현황 등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그 밖에 -----

1. 제20조의3에 따른 농업법인

1. (생략)

2. ~ 4. (생략)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 <u>1.</u> (생 략)
- 2. (생략)

<신 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 4. (생 략)

| <u>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 청</u>               |
|--------------------------------------|
| <u>구</u><br><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
| 2. ~ 4. (현행과 같음)<br>제31조의2(벌칙)       |
| 세31쇼의2(혈석) ======                    |
|                                      |
|                                      |
|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
| 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                      |
| 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
| 등록을 한 자                              |
| <u>1의2.</u>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회사                   |
| 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
| 용한 자                                 |
| 제33조(과태료) ①                          |
|                                      |
|                                      |
|                                      |
| <u>&lt;삭 제 &gt;</u>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